

## 한두환 수의사·변호사의 법률칼럼 - 수의사의 생활법률 (32)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한 두 환  
법무법인 송파  
변호사  
lawvet@naver.com



에게 따르는 책임이 있을까?

동물원은 수의사들이 일하는 직장 중 하나이다. 그런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6년 5월에 국회에서 제정된 바 있으며, 해당 법률은 2017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수의사와 관련성이 있는 법률이 새로이 제정되었으므로 해당 법률에서 수의사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자.

### 동물원의 수의사 고용의무

동물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명의 수의사는 동물원 안의 멧돼지 등 동물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김명의 수의사는 자신이 관리하던 동물원 안의 멧돼지가 질병에 걸렸으나 이를 간과하고 말았다.

김명의 수의사는 해당 멧돼지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다가 추후에 치료를 해주었다. 그 후 멧돼지가 우리를 탈출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다행히 동물원에서 신속히 멧돼지를 포획하였으나 관할 시·도지사에 달리 통지를 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경우 동물원과 김명의 수의사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등록요건으로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은 그 전문인력으로 동물원의 경우는 수의사 1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해양포유류를 사육하는 수족관의 경우에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동물원은 모두 수의사를 필수적으로 고용하여 관리업무를 맡겨야 한다. 특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

에 관한 법률]은 등록을 해야 하는 동물원으로 국내의 유명 대형 동물원뿐만 아니라 10종 이상의 가축을 보유한 시설, 50 마리 이상의 개체를 보유한 시설,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보유한 시설 등 대규모 동물원이 아닌 경우도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체험관과 같이 대규모 시설이 아니더라도 등록 대상 동물원으로서 수의사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동물보호의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물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에도 규정되어 있으나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동물에 대하여 [동물보호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부분도 세밀히 보호하는 취지이다.

그 내용을 보면 적극적으로 동물을 때리거나 죽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먹이와 급수를 제한하는 행위와 질병에 걸린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동법 제16조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소극적으로 유기한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김명의 수의사의 경우도 자신이 건강을 관리하는 멧돼지의 질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진다. 이는 다른 직종의 수의사들과는 달리 동물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의 경우에 특별히 인정되는 책임이다.

## 안전관리의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보

유한 동물이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포획·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뿐만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동물원 운영자나 담당직원은 동법 제18조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김명의 수의사와 관련하여서도 멧돼지의 탈출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수의사가 안전관리업무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500만원 이하의 과

태료가 부과되는 일은 없을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물체험관 등 소규모 동물원에서 수의사가 근무하며 안전 관리업무까지 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경우라면 김명의 수의사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다.

## 기타 주요 내용 및 의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동물원 등의 운영·관리 기록을 유지하고, 관할 지자체가 동물원 등을 지도·점검하는 등의 일반 관리에 관한 내용과 동물에게 적정한 서식환경을 제공할 의무 등도 규정하고 있다.

수의사의 직무와 관련한 법적 인프라가 보강되는 것은 수의사에게 일정한 의무를 지우는 면도 있으나 그간 인식이 부진했던 수의사 분야를 제도권으로 포섭하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